

<현재안>

제 3 장 교회 회의와 부설기관

제 1 조: 총회(정기/임시)

2 항: 시기

매년 두 번(6 월과 7 월)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임시총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, 혹은 제직회 1/2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
6 항: 안건처리

총회의 주요 안건 처리는 다음과 같다.

- 1) 6 월 정기총회: 각 부서장을 선출하여 차기 운영 위원회를 조직한다.
- 2) 7 월 정기총회: 본 교회 회계 결산과 예산, 업무보고 및 계획을 인준한다.

제 2 조: 운영위원회(정기/임시)

3 항: 임기와 회기

부서장의 임기와 회기는 매년 7 월 1일부터, 다음해 6 월 30 일까지 이다. (단, 재정부장의 경우, 필요와 편의에 따라 총회의 인준 및 본인의 동의를 거쳐 1 년 더 연임할 수 있다.)

5 항: 자격과 선출

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, 운영위원, 안수집사(장로)로 구성되며, 운영위원들은 본 교회의 제직으로서, 매년 6 월 정기총회에서 추천받고,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총회선출하며, 담임목사가 인준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 2 조: 재정부장

1 항: 선출

매년 6 월 총회를 통해, 각 운영 위원회 위원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된다.

제 3 조: 회계처리

1 항: 기간

본 교회의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7 월 1일부터, 다음해 6 월 30 일 까지로 한다.

<개정안>

제 3 장 교회 회의와 부설기관

제 1 조: 총회(정기/임시)

2 항: 시기

매년 두 번(1 월과 12 월)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임시총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, 혹은 제직회 1/2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
6 항: 안건처리

총회의 주요 안건 처리는 다음과 같다.

- 1) 12 월 정기총회: 각 부서장을 선출하여 차기 운영 위원회를 조직한다.
- 2) 1 월 정기총회: 본 교회 회계 결산과 예산, 업무보고 및 계획을 인준한다.

제 2 조: 운영위원회(정기/임시)

3 항: 임기와 회기

부서장의 임기와 회기는 매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이다. (단, 재정부장의 경우, 필요와 편의에 따라 총회의 인준 및 본인의 동의를 거쳐 1 년 더 연임할 수 있다.)

5 항: 자격과 선출

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, 운영위원, 안수집사(장로)로 구성되며, 운영위원들은 본 교회의 제직으로서, 매년 12 월 정기총회에서 추천받고,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총회선출하며, 담임목사가 인준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 2 조: 재정부장

1 항: 선출

매년 12 월 총회를 통해, 각 운영 위원회 위원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된다.

제 3 조: 회계처리

1 항: 기간

본 교회의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.